

# 대출상품설명서

채 무 자	(서명)	담 보 제 공 인	(서명)
채 무 자 주 소			
담 보 제 공 인 주 소			
상 담 일		상 담 원	
<p>상기 본인은 (주)인더스코대부(주소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4, 602호, 703호(신사동, 디앤씨빌딩) / 대부업등록번호 : 2016-금감원-0095(대부업) / 전화번호 02)357-2681)와 대부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 체결 전에 대부회사 직원과 상담하여 본인이 신청한 대출과 관련된 1. 상품 개요 및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가 달라짐을 2. 대부기간별, 상환방법별 조건표를 통해 이해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본인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한 3. 대부이용자 주의사항의 설명내용을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p>			

## 1. 상품 개요 및 특성

대 출 기 간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2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4년 <input type="checkbox"/> 5년	대 출 개 시 일	20 년 월 일
대출신청금액	금 원 (₩ )	대 출 만 기 일	20 년 월 일
실제수령금액	금 원 (₩ )	대 부 이 자 율	고정 연 % (월 %)
채 권 보 전	<input type="checkbox"/> 담보 <input type="checkbox"/> 신용	연 체 이 자 율	연 % (월 %)
거 래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 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은 재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		
※ 대출 상품설명 단계에서 고객님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와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체결로 고객님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대출금액과 이자, 수수료 등을 합산한 총액이며,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심사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상환방식	<input type="checkbox"/> 원금자유 : 이자 납입일 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개시일로부터 익 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		
이 자 지 급 시 기	<input type="checkbox"/> 매월 당사 약정일 중 고객이 원하는 ( )일에 지급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이자지급일 해당 월에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함 ※ 대부기간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그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함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은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함 총당순서는 비용, 입금일 까지 발생한 이자, 원금 순이며 이자지급일 - 10일 이전 입금 시 해당 월 이자지급일에 미납한 이자를 한번 더 상환해야 함.		
이 자 율 등 의 한 제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법정최고이자율(연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임. 이때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 밖의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봄 ※ 법정최고금리(연 20%)의 위반 여부는 대부금의 실제사용기간을 대상으로 판단하되, 연 이율과 더불어 이자납입주기가 있는 경우 6개월 10%, 3개월 5%, 월 1.666%, 일 0.0547% 임 <예시> 대부원금 1,000만원인 경우 기간별 이자납입 최고액(소수점 단위 절사) 연체일수에 따른 연차이자 한도 : 1일 : 5,479원, 10일 : 54,794원, 30일 : 164,383원, 90일 : 493,150원		
상 환 계 좌	은행명 : 우리은행, 예금주 : (주)인더스코대부, 계좌번호 : 1005 - 702 - 492461 ※ ( 대부원금 및 이자는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계좌로 입금 / 단, 계좌번호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 도 상 환 수 수 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대부금액 × ( )% × (잔여일수 ÷ 대부기간)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임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대부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 대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기간은 3년으로 함 ※ 대부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금액은 법정최고금리 연 20%내 임		
부 대 비 용	1. 신용조회비용 1,500원 2.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 5,000원 3. 담보상품에 한해 담보권설정 및 해지비용 발생 (금 원) ① 등록세 : 원, ② 교육세 : 원, ③ 국민주택채권 : 원, ④ 등기신청수수료 : 원, ⑤ 확인서면비 : 원, ⑥ 주소변경비 : 원, ⑦ 말소비(건당) : 원, ⑧ 기타(등본발급, 제증명 등) : 원		
이 자 계 산 법	대출잔액 × 이율 × 해당이용일수 ÷ 365(단, 윤년일 경우 366) (원금상환 및 이자납부가 연체된 경우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 이자를 적용)	<b>증명서 발급비용 및 기한</b>	내점시 : 즉시 유선 및 우편 요청시 : 3영업일 이내로 발송

## 2. 대부기간별 · 상환방법별 조건표

<예시> 대부원금 1,200만원, 대부금리 : 20%

연간납입액	1년			3년			5년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원금 균등상환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1년	1,330	1,334	1,440	603	535	240	458	381	239
2년	-	-	-	523	535	240	410	381	239
3년	-	-	-	443	535	1,440	362	381	239
4년	-	-	-	-	-	-	314	381	239
5년	-	-	-	-	-	-	266	381	1,439
합계	1,330	1,334	1,440	1,570	1,605	1,920	1,810	1,907	2,399

주)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부담하는 이자는 달라집니다.

- ① 대출기간이 길수록 부담이자는 많아집니다.
- ② 상환방법에 따라 부담이자는 달라집니다. : 원금균등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③ '만기일시상환'이란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며, '분할상환'이란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 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④ 원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 3. 대부이용자 주의사항

- ① (기한의 이익 상실) 대부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 일부 내용)

「기한의 이익」이란 대부업자와의 대부거래에서 채무자인 대부이용자가 당초 약정한 대부기한까지는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 상환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므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파산신청이 있는 때

나.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로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 **2개월 지체** ) 한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 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 ② (채권의 양도) 대부업자가 계약서상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③ (연체정보 등 등록)

- 가. 대부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한국 신용정보원 등 종합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금융거래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연체정보 등이 정보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하여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다.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간에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뿐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대부중개수수료) 대부이용자 등은 대부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⑤ (대출사기에 주의)

- 가. "저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 등은 대출빙자형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나. "개인신용평점 상향조정", "대출진행비용" 등을 요구하는 대출사기에 주의

- ⑥ (대부원리금 상환) 대출 실행 이후 SMS로 안내되는 전용 가상계좌로만 대부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함

- ⑦ (서민정책 금융상품 활용) 정부에서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지원제도 및 서민금융정책상품을 운영 중이므로 신청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⑧ (연체이자율 상한)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대출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3%p"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 시 연체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⑨ (금융거래시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주의사항 및 기타 주의사항 안내)

- 가. 본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신용정보주체인 채무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 본 금융거래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부계약입니다.
- 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 할 수 있습니다.
- 라.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신용공여는 일반적인 신용공여보다 개인신용평점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마. 본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바. 개인신용평점을 올려 준다면 전산 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의 입금을 요구하거나 대한대출, 대출취소,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빌미로 완납을 유도하는 대출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앱 설치, 홈페이지 접속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 아. 대출서류 위·변조, 타인의 정보 도용, 허위 작업대출, 통장 및 현금카드 불법 매매·양도 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⑩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

- 가. 일반금융소비자(개인 및 개인사업자, 5인 미만의 법인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분류되길 요청한 법인)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다만 금전·재화·용역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 대체함)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나.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세부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약정서에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차용)

**⑪ (위법계약해지) 금융소비자는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하고 계속적 계약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계약에 대해 해지 수수료·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위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내 범위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⑫ (계약기간, 연장,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최초 심사에 비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등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담보목적물의 시세 하락 등의 사유로 대출계약의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부대출, 공무원 대출 등 기타 협약대출 등)의 경우 같은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다. 대출계약의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라. 대출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대출취소 또는 대출 심사거절 시 발생한 비용(법무사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⑬ (이자율의 산출기준)**

- 가.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목표이익률)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나. 원가요소는 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및 자본원가 등으로 구분하여 금융회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하며, 기준금리는 이러한 원가요소에 목표 이익률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 다.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라.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⑭ (담보권 설정·실행사유, 소유권상실 위험성)**

- 가. 담보의 종류는 한정 근담보로써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일반자금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 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나. 대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무자는 대출만료일 이전이라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다. 나항의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란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절차의 따라 담보 부동산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 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타인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⑮ (자료열람요구권)**

- 가.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대부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 대부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다. 대부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용관련 애로사항 상담 · 문의처**

구분	상담 · 문의처	구분	상담 · 문의처
대부업 등록여부 조회	금융감독원(1332)	민원 · 분쟁신청	금융감독원(1332)
이자계산기	금융감독원(1332)	불법대부 · 추심신고	금융감독원(1332)
서민정책금융상품	서민금융진흥원(1397)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이 설명서는 대부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부계약은 대부거래계약서,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